



-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-

법무부

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등록 안내



- ◆ '16.9.30.부터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8조(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)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아래와 같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2016. 9. 19(월)

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
□ 대상자

-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」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하려는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(재외동포(F-4) 자격소지자 포함)
- ※ '16.9.30. 이전에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제외

□ 등록 장소

-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

□ 등록 기간

- (신규 국내거소신고자)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 등 정보등록
- (기존 국내거소신고자) 재외동포(F-4) 자격 소지자는 아래 연령별 설정된 기간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지문 등 정보등록

구분	30세 이하 (~86.12.31)	31~40세 (85.1.1~76.12.31)	41~50세 (75.1.1~66.12.31)	51~60세 (65.1.1~56.12.31)	61세 이상 (55.1.1~)
등록기간	'16.10월, 11월	'16.12월 '17. 1월	'17. 2월, 3월	'17.4월, 5월	'17.6월, 7월,8월,9월

※ 재외동포(F-4)의 전자민원 신청은 지문 등 정보등록 후 이용 가능

□ 시행일 : '16.9.30.부터